적극 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 지침

제 정 2012. 9.27 전문개정 2016. 8. 2 개 정 2017. 5. 8 개 정 2018. 8.23 개 정 2019. 5.20 개 정 2019.11.29 개 정 2022.10. 6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감사규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 행정 면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,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대상자의 의견 또는 지적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,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10.6>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적극 행정"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공사 및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<개정 2022.10.6>
- 2. "적극 행정 면책"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「감사규정」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 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2.10.6>
- 3. "자체감사를 받는 자"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대상자를 말한다.
- 4. "불이익한 처분요구"라 함은, 「감사규정」 및 「감사규정시행세칙」에서 정한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말한다.
- 5. "감사소명제도"라 함은 감사실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 행정 면책의 신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실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 등의 제도를 말한다.<개정 2022.10.6>
- 6. "감사소명자료"라 함은 감사실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실에 제출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을 하기 위한 자료 등을 말한다.

제 2 장 적극 행정 면책<개정 2022.10.6>

제3조(적극 행정 면책의 적용 범위) ① 이 지침은 공사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.

<개정 2022.10.6>

② 국가적인 경제난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정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한다.<신설 2022.10.6>

제4조(면책 대상자) 이 지침에 의한 면책은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대상자에게 적용된다.

- 제5조(적극 행정 면책의 기준)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 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1.29., 2022.10.6>
 - 1.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, 공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
 - 2.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<개정 2019.5.20>
 - 3. (삭제) <2019.5.20>
 - 4.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<개정 2019.5.20>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·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 행정 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9.11.29., 개정 2022.10.6>
- 제6조(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) 제5조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.<개정 2019.5.20>
 - 1.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
 - 2.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<개정 2019.5.20>
 - 3. (삭제) <2019.5.20>
 - 4. (삭 제) <2019.5.20>
- 제7조(유의사항)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,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22.10.6>
- **제8조(면책제도 안내)** ① 감사는 실지감사 실시통보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 행정 면책제도 에 대한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서와 함께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.<개정 2018.8.23., 2019.11.29.,2022.10.6>

삭제<개정 2019.11.29>

② 감사실시 중 확인서, 질문서, 문답서를 증거보완 서류로 작성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 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통지한다.<신설 2018.8.23, 개정 2019.11.29., 2022.10.6>

제 3 장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및 처리

- 제9조(소명자료의 제출)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는 감사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'감사 관련 소명서'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1.29>
 - ② 적극 행정 면책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전항의 '감사 관련 소명서'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'적극 행정 면책 사유서'를 작성하여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1.29., 2022.10.6>
 - ③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적극 행정 면책 신청은 실지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감사결과의 처분요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.<개정 2019.11.29., 2022.10.6>
- 제10조(소명자료의 접수 및 처리) ① 감사실은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, 단 제9조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이후 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적극 행정 면책신청에 대해서는 감사규정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결과심의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하며, 그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7일을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8.8.23., 2022.10.6>
 - ② 감사반장은 제9조에 의한 적극 행정 면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'적극 행정 면책검토서'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1.29., 2022.10.6>
 - ③ 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심의에 우선하여 면책심사 안건을 심의하며, 심의시해당 안건 관련 감사인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, 필요시 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<개정 2018.8.23>
 - ④ 감사실은 적극 행정 면책 등 소명자료의 검토 및 심사 결과를 감사처분요구 확정시 반영하여 야 한다.<개정 2022.10.6>
 - 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'적극 행정 면책 심사결과'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. <개정 2019.11.29., 2022.10.6>
 - ⑥ 적극 행정 면책 등 감사 소명자료 검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'감사규정'및 '감사규정시행세칙'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에따른다.<개정 2022.10.6>
- 제11조(직권에 의한 면책) 감사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 행정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.<개정 2022,10.6>
- 제11조의2(현장 면책)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5조의 적극 행정 면책의 기준에 총족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지감사 종료일 1일전까지 감사반장에게 제9조 제2항의 방법으로 현장면책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반 내부회의를 거쳐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사마감회의 시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알려야 한다.<신설 2019.11.29., 2022.10.6>
 -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5조의 적극 행정 면책의 기준에 충족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

우 제1항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감사마감회의 시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알려야 한다.<신설 2019.11.29., 개정 2022.10.6>

- 제12조(적극 행정 면책 통보) ① 감사는 제9조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면책하기로 결정한 사항또는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5.8>
 - ② 감사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<신설 2017.5.8., 개정 2022.10.6>
- 제13조(소명자료의 제출자에 대한 통지) 감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불문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갈음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하며, 「적극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지침」에 의하여 접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례) 개정사항은 이 지침 시행 이후 면책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적극 행정 면책제도 안내문

감사대상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「적극 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 제도 운영 지침」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지침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실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 1. 면책 대상자 :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대상자
- 2. 신청기간 : 실지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(현장면책의 경우 실지 감사 종료 1일전)
- 3. 신청방법 : '감사 관련 소명서'(별지 제2호 서식) 및 '적극 행정 면책 사유서'(별지 제3호 서식) 작성하여 감사실 제출
- 4. 적극 행정 면책 요건
 -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, 공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
 -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
 -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·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. 단,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
- ※ 감사 지적 내용에 대해 적극 행정 면책 등 감사 관련 소명을 신청한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[관련규정: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27조(감사결과심의위원회) 제4항]

감사 관련 소명서

1. 제출자	부서명		직 급			
	성 명		연락처			
	감사사항과 제출자의 관련성					
2. 소명자료 관련 감사 사항명 및 지적건명	(예시) ○○관리실태 감사					
	(하도급공사계약 관련)					
3. 소명자료 제출 취지 (해당사유 모두 표시)	사실관계 상이 () / 새로운 증거 () / 법령해석 차이 () / 적극 행정 면책 () / 정상참작 등 기타 ()					
4. 소명 요지	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					
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소명(적극 행정 면책)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.						
20						
신청인(인)						
첨부서류 : 1. 소명자료 2. 적극 행정 면책 사유서						
				감 사 실	귀중	

※ 소명서 작성시 유의사항

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

적극 행정 면책 사유서

적극 한	·정 면책 요지			
구체적 판단기준 내용		해당 여	부	소명자료
1.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, 공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				
2.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				
3.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	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이해 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절차상의하자가 없었을 것 			
4. 기 타				

※ 적극 행정 면책 신청의 경우에만 작성

적극 행정 면책 검토서

				ヹ	¦사반장 :	(인
일련번호		감사명			감사기간	
심사대상	소속 :		직급:		성명 :	
제 목					감사인	
감 사 지적사항						
		면책	기준별 검토의	의견		
,	면책신청 구체	적 판단기준			검토의견	
업무처리의 불합리한 개선, 공사 및 공공의 이익 여부						
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인지 여부						
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						
기 타						
종합의견						

적극 행정 면책 심사결과

건 명			
심사대상자	소 속	직급	성명
심사결과			

년 월 일

감사결과심의위원회 역	위원장	(인)
위	원	(인)
위	원	(인)
위	원	(인)
위	원	(인)